

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심사결과

연번	의안 번호	의안명	심사결과
1	2719	202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	원안가결
2	2720	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	원안가결
3	2721	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4	2722	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원안가결
5	2723	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6	2724	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7	2725	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8	2726	2026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	원안가결
9	2727	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10	2728	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민간위탁 동의안	원안가결
11	2729	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12	2730	장성군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	원안가결
13	2731	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(가칭)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 시설용지 매입 협약 동의안	원안가결
14	2732	장성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	원안가결
15	2733	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	원안가결
16	2735	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및 농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	원안채택

주요내용

1. 202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

- 발의일자 : 2026. 3. 4.
- 발 의 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
- 제안이유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 및 「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함.
- 주요내용
 - 인 원 : 5명
 - 활동기간 : 2025. 4. 10.(금) ~ 4. 29.(수) / 20일간
 - 활동사항
 - 202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 및 감사의견서 제출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2.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26. 3. 6.
- 발 의 자 : 차상현 의원 외 1
- 제안이유
 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인사청문 대상 직위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 ~ 제4조)

-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 자료(안 제6조)
-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(안 제7조)
- 위원회의 활동기간(안 제10조)
-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및 위원장의 보고(안 제11조 ~ 제12조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3.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26. 3. 4.
- 발 의 자 : 김연수 의원 외 1
- 제안이유
 - 2025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고,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
 -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분할사용가능 횟수 확대(안 제13조제5항제1호)
 -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(3회) → 10일(5회)
 - 공무원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특별휴가(1일) 신설(안 제13조제9항)
 -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변경(안 별표3)
 - 배우자 출산 시 : 10일 → 20일
 - 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→ 25일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4.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- 발의일자 : 2026. 3. 6.
- 발 의 자 : 서춘경 의원 외 1

- 제안이유
 -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 국외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(안 제4조)
 - 공무국외출장 제한사항(안 제11조)
 - 사후관리 강화(안 제12조)
 - 직원 보호 강화 규정 신설(안 제16조)
 - 심사기준표 관련 개정(별표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5.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26. 3. 6.
- 발 의 자 : 차상현 의원 외 1
- 제안이유
 - 의원 발의 · 위원회 제안 또는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재정부담 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확대(안 제1조 ~ 안 제3조)
 - (현행) 장성군수가 제출하는 의안
 - (개정) 장성군수, 의원 및 위원회, 주민청구조례안
 - 비용추계 제외 대상 추가(안 제4조)
 -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
 - 작성시기 관련 규정 정비(안 제8조)

- (현행) 비용추계서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른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되, 상정 전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(개정) 의안의 소관부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 혹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6.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▪ 발의일자 : 2026. 3. 6.

▪ 발 의 자 : 김연수 의원 외 1

▪ 제안이유

-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, 환경개선비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- 이용대상 및 교육의 중립성(안 제5조 ~ 안 제6조)
 -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의 중립성 정비
-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(안 제8조)
 -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및 아동센터 환경 개선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근거 조항 명시
- 사업비 환수 조항 신설(안 제9조)
 -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 -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
- 위원회 구성(안 제10조)
 - 가족행복과장 →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7.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6. 3. 6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제안이유
 -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 조성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(제4조 ~ 제6조)
 - 교육 및 실태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
 -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등 체계 정립(제7조 ~ 제8조)
 - 신고 및 조사 방법,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체계 정립
 -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노력(제9조 ~ 제11조)
 - 비밀 유지,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
 - 허위신고 제재(제12조)
 - 무분별한 신고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규정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8. 2026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

- 제출일자 : 2026. 3. 6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제안이유
 - 2026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(안)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- 2025년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수입액 증가 및 2026년 지출계획 변경사항 반영(사회복지기금)

- 기금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기금명 (부서명)	2026년도 운용계획								비고
	당 초				변 경				
	25년도말 조성액	수입	지출	26년도말 조성액	25년도말 조성액	수입	지출	26년도말 조성액	
사회복지기금 (주민복지과)	2,818,518	155,881	155,880	2,818,519	4,403,309	155,881	2,047,198	2,511,992	

- 자금운용계획

(단위: 천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항 목	변 경	당 초	증 감	항 목	변 경	당 초	증 감
합 계	4,559,190	2,975,658	1,583,532	합 계	4,559,190	2,975,658	1,583,532
전 입 금	78,846	78,846	0	비용자성사업비	2,047,198	155,880	1,891,318
예치금회수	4,403,309	2,819,777	1,583,532	예치금	2,511,992	2,819,778	△307,786
이자수입	62,035	62,035	0				
기타수입	15,000	15,000	0				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9.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6. 3. 6.

- 제출자 : 장성군수(총무과장)

▪ 제안이유

- 2025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 단체협약 사항 이행
- 상위법령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 개정사항 반영.

▪ 주요내용

-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분할사용가능 횟수 확대(안 제13조5항)
 -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확대(5일→10일)
 - 분할 사용가능 횟수 확대(3회→5회)

- 공무원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특별휴가(1일) 신설(안 제13조7항)
 - 공무원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특별휴가 1일 부여
-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변경(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사항 반영)
 - 배우자 출산시 10일 → 20일
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→ 25일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0.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민간위탁 동의안

- 제출일자 : 2026. 3. 6.
- 제출자 : 장성군수(환경과장)
- 제안이유
 - 현재 생활폐기물을 직영으로 수집·운반 중인 진원·남면과 향후 첨단3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사업개요
 - 1) 사업명 :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민간위탁
 - 2) 대상지역 및 위탁대상 범위
 - 가) 대상지역 : 진원면, 남면, 첨단3지구(공동주택)
 - 나) 수집·처리대상 : 일반쓰레기(종량제), 재활용품
 - 다) 처리량 : 약 3,300톤/년(일반 2,500톤/년, 재활용 800톤/년)
 - 3) 위탁기간 : 2026. 7. 1. ~ 계속
 - 4) 소요예산 : 513,988천원/년 ※ 산출근거 : 2026년 원가산정 용역 결과 반영
 - 5) 선정방법 : 일반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○ 위탁사유

- 공공서비스 공급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대응
- 환경관리센터 인력관리(연·병가 등 불규칙 결원) 어려움 해소
-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지자체 책임부담 완화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1.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▪ 발의일자 : 2026. 3. 6.

▪ 발 의 자 : 나철원 의원 외 1

▪ 제안이유

-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장성군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-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(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)
 - (현행) 주요도로, 주거 밀집지역,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(단,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는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)
 - (개정) 주요도로, 주거 밀집지역,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, 10호 미만 주거지역 단서 조항 삭제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2. 장성군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

▪ 발의일자 : 2026. 3. 6.

▪ 발 의 자 : 나철원 의원 외 1

▪ 제안이유

- 국내 잔디 생산의 중심지인 장성군의 잔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잔디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군수 등의 책무(안 제3조)
- 종합계획의 수립,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잔디산업 활성화, 연구 및 기술 개발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(안 제8조)
- 위원의 임기,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수당 등(안 제9조 ~ 안 제13조)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3.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(가칭)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 시설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

▪ 제출일자 : 2026. 3. 6.

▪ 제출자 : 장성군수(인구경제실장)

▪ 제안이유

-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(가칭)는 신규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해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임.
-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준공 후 3년 내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확약이 요구되어 「지방자치법」 제 4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(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)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가. 사업 현황

- 사업명 :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(가칭) 조성사업
- 위치 :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, 남면 삼태리 일원
- 사업기간 : 2024년 ~ 2032년(9년간)
- 총사업비 : 3,966억원(공사비 1,810, 보상비 1,316, 기타 840)
- 사업규모 : 일반산업단지 조성 882,343㎡
 - 산업시설 558,768㎡, 주거시설 48,923㎡, 지원시설 29,971㎡, 공공시설 244,681㎡

나. 「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협약」 체결

- 대상자 : 한국산업단지공단
- 내용 : 준공 후 3년 동안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장성군 매입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4. 장성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- 제출일자 : 2026. 3. 6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지역개발과장)
- 제안이유
 - 농촌협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기능 수행을 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위탁목적 : 농촌협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기능 수행을 위함.
 - 위탁기간 : 2026. 4. ~ 2029. 3.(3년)
 - 위탁사업 : 장성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
 - 위탁기관 : 장성군 농촌협약 지원센터(대표 김혜영)
 - 위탁사무

- 농촌협약의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 수행
- 주민, 현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/W 사업 지원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
- 공동체, 마을만들기 등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
-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컨설팅 등

○ 소요예산 : 367,000천원

○ 선정방식 : 기존 수탁기관 재위탁 심사

○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5.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26. 3. 6.

▪ 제출자 : 장성군수(농산유통과장)

▪ 제안이유

○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식산업 육성과 외식교육·창업·미식관광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○ 목적, 용어 정의, 시설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7조)

○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안 제10조)

○ 시설 사용, 사용료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안 제18조)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6.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및 농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

▪ 발의일자 : 2026. 3. 16.

▪ 발 의 자 : 서춘경 의원 외 1

▪ 제안이유

-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비료·사료·농약·시설자재·면세유 등 영농에 필요한 주요 농자재의 가격 및 수급 불안이 농업 현장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음.
- 장성군은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, 농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는 농가 경영 악화와 지역 농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, 이는 농촌경제 전반의 위축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.
- 정부가 유가 안정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고, 실제 영농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, 농자재 가격 안정과 농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- 정부는 주요 농자재의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고, 농업 현장을 지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.
- 정부는 에너지·물류비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비 부담을 농업인에게 떠넘기지 말고,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하라.
- 정부는 국제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보장하고 지역 농업 보호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.

▪ 의결결과 : 원안채택